

울산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단1075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원고보조참가인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림, 김경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8.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A 사이에 2022. 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 12. 29. 접수 제134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개인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A의 채권자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원고가 되어 2023. 3. 23. 피고를 상대로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3. 4. 20. 울산지방법원 2022개회17823호로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개인회생채무자 A는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별지